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25 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이훈기·복기왕·이정문

박지원 • 조인철 • 정동영

김정호 · 김용만 · 박수현

주철현 · 김원이 · 노종면

박민규 • 황정아 • 조승래

민병덕 · 김남근 · 문금주

최민희 • 황명선 • 박용갑
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,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추천·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· 의결하여야 함.

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,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선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6727호), 「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724호) 및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 672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호 중 "추천"을 "임명제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이사 및 감사 임명"을 "이사 추천과 임명 및 감사 임명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"사장·이사 및 감사의"를 "감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조(위원회의 심의・의결 사	제12조(위원회의 심의・의결 사		
항)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	চু})		
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・의결			
한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<u>추천</u>	2 <u>임명제</u>		
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	<u>청</u>		
3. 방송문화진흥회의 <u>이사 및</u>	3 <u>이사 추천과</u>		
<u>감사 임명</u> 에 관한 사항	<u>임명 및 감사 임명</u>		
4. 한국교육방송공사의 <u>사장・</u>	4 <u>감사</u>		
<u>이사 및 감사의</u> 임명에 관한			
사항			
5. ~ 29. (생 략)	5. ~ 29. (현행과 같음)		